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월 16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4.1.3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 제안이유

○ 우리구 관내 강서대학교에서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강서구의회 의견 청취 요청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청취하는 것.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대 상 지: 화곡동 953-1번지 일대(1캠퍼스), 등촌동 산36-4번지 일대(2캠퍼스)

○ 면　　적: 총 39,117㎡(1캠퍼스 21,676㎡, 2캠퍼스 17,441㎡)

○ 사업주체: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사 업 비: 약 670억원

- 1캠퍼스 5억원(사업주체 건축기금)
- 2캠퍼스 665억원(사업주체 건축기금 및 사학진흥재단지원금)

○ 사업내용

- 강서대학교 1캠퍼스 휴게시설 신축 및 2캠퍼스 신설(기숙사 포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39,117㎡

- 1캠퍼스(21,676㎡): 화곡동 953-1번지 일대
- 2캠퍼스(17,441㎡): 등촌동 산36-4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변경 41,544㎡→15,215.8㎡(감 26,328.2㎡)을 통해 변경부지 일부 2캠퍼스 지정)

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학교	강서대학교	계	-	-	증) 39,117	39,117	-	
			1캠퍼스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	-	증) 21,676	21,676	-	
			2캠퍼스	강서구 등촌동 산36-4 일대	-	증) 17,441	17,441	-	
변경	학교	등촌중학교	-	강서구 등촌동 534-9번지 일대	41,544	감) 26,328.2	15,215.8	'77.04.11	

※ 학교결정 면적(39,117㎡)은 비오톱1등급지(793㎡), 녹지보존구역(12,846㎡)을 포함한 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강서대학교 제1캠퍼스	• 신설 - 면적: 21,676㎡	• 현황 학교시설(강서대학교)의 시설 결정 - 현황 대학교 부지: 증) 21,676㎡
강서대학교 제2캠퍼스	• 신설 - 면적: 17,441㎡	• 법정 교지면적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로 결정 - 대학교 신설 부지: 증) 17,441㎡ ※등촌중 부지(15,865.5㎡)+산47-8번지(884.8㎡) +533-22번지(690.7㎡)
등촌중학교	• 변경 - 면적: 15,215.8㎡ (감 26,328.2㎡)	• 강서대학교 2캠퍼스 신설에 따라 학교경계 변경 - 대학 결정(신설)부지 제척: 감 15,865.5㎡ - 등마루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결정부지 해제: 감 2,350.6㎡ - 구적오차 정정: 감 8,105.4㎡ -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복부지 제척: 감 6.7㎡

3.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제안이유

○ 강서대학교가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미결정된 상태로 계속 운영되어 왔으며, 2013년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요구됨.

○ 이에 201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조건부 이행(기부채납)이 교육부의 반려로 완료되지 않아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조건부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하고

○ 현행 학교부지를 제1캠퍼스로,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를 제2캠퍼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제안함.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입안**하거나 **변경 결정** 시, 주민(열람공고실시)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 의견 청취 □

○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열람공고 제2024-72호

○ 공 고 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 열람기간: 2024. 1. 11. ~ 1. 25.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게재: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다. 주요 내용

○ **강서대학교 제1캠퍼스 학교시설 결정**

- 학교시설부지 21,676㎡

(학교시설부지 18,205㎡ + 도시자연공원구역부지 3,471㎡)

※ 학교 내 도시자연공원구역부지 강서대학교 소유 인근 부지로 대체

○ **강서대학교 제2캠퍼스 학교시설 결정**

- 학교시설부지 17,441㎡

(2캠퍼스 신설에 따라 등촌중학교 41,544㎡ →15,215.8㎡(감 26,328.2㎡))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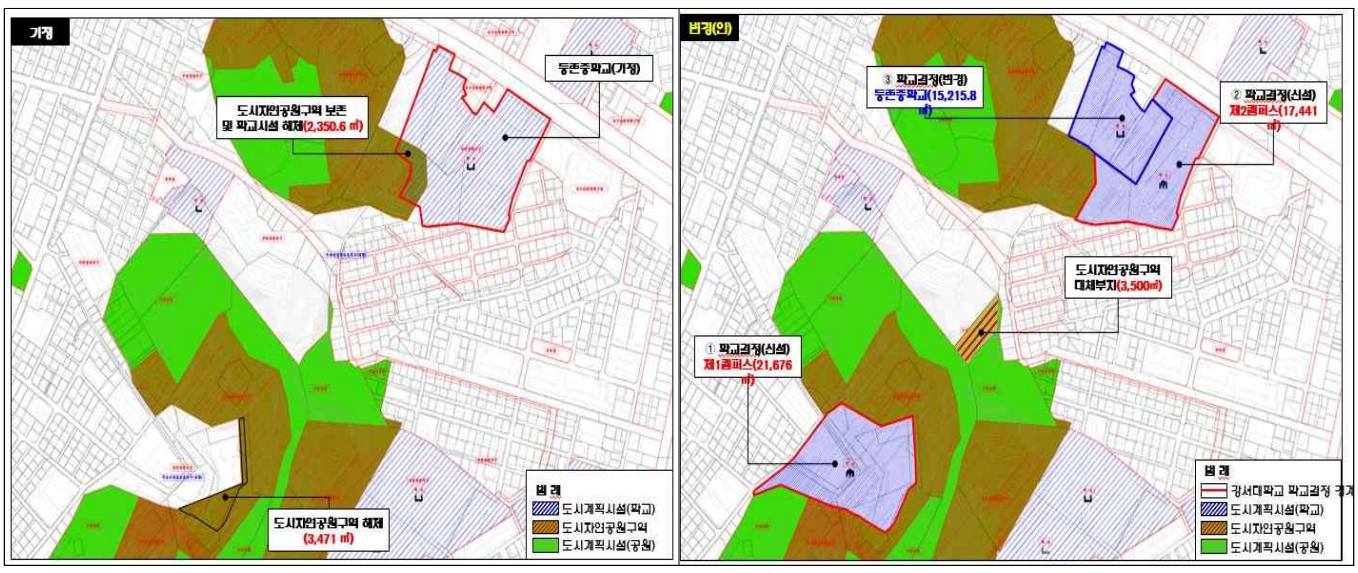

라. 추진경위

○ 1958.4.: 강서대학교(한국기독교학원) 설립

○ 1973. :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인가

○ 1995. : 신학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

○ 2005.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추진하였으나 결정 불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교 신설 제한**

○ 2013.7.: **교육부의 강서대학교 감사 및 감사결과 처분이행 촉구**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미결정에 대한 이행 촉구

○ 2013.12.: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 **수도권 내 기존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 회신**

○ 2015.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청(강서대학교→강서구)

○ 2015.~2016.: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 **2016. 9. 2. 구의회 의견청취(조건부동의: 기부채납)**

- 2016. 9. 9. 구 도시계획위원회(원안동의)

○ 2016.11.: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11.: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기부채납 허가신청 반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부 의견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 허가 제한**

○ 2018.2.~4.: **기본재산 처분인가 신청 및 반려(강서대학교↔교육부)**

○ 2018.~2023.: 조건부이행을 위한 해결방안 협의(강서대학교↔서울시)

- **당초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 지정**

○ 2023.9.: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철회 후 재신청

○ 2024.1.11.~1.25.: 열람공고 시행

향후계획

○ 2024. 2.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2024. 3.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 종합의견

○ 본 안건은 현황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1]하여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의 증축, 신축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 2013년 7월 교육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6.9)

- 당시 구의회의 조건부 동의안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의 기부채납을 교육부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반려(2018. 2.~4.)**[2]됨에 따라
- 서울시와 조건부이행을 위한 해결방안(기부채납 없는 대체부지 지정)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제안한 것.

○ 주요내용은 화곡동 953-1번지 일대 캠퍼스 부지 2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등촌동 534-9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 17,441㎡를 제2캠퍼스로 하여 **총 39,117㎡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 강서대학교 내 일부 3,471㎡ 면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인근의 동일면적을 대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등촌중학교 당초 면적을 41,544㎡에서 15,215.8㎡로 줄여 제2캠퍼스 부지(17,441㎡)를 확보한 것임.

---

1) 1958년 강서대학교(한국기독교학원) 설립 이후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는 미결정된 상태**

2)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됨. 강서대학교(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소유부지는 모두 기본재산에 속하고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에 공여되는 토지로, 교육부에서는 학교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반적 재산 감소는 교비 회계 및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에 저해되며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교육부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학교시설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체부지 기부채납 반려에 상응하는 학교주차장 주민개방 등 주민 공공 혜택 방안을 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의견제시안 채택

붙임 의견제시안 및 관련 자료 각 1부.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기존 대체부지(3,500㎡) 외 강서구 화곡동 산 204-4, 면적 6,938㎡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2024. 1. 3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붙 임 **위치도 및 대체부지 현황**

붙 임 **교육부 기본재산 처분인가 신청 및 반려 공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공문(KC대학교, 18.1.30.)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수신자 교육부장관

(경유) 사립대학정책과장

제목 대체공원부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법인2017-97-2(2017.3.9.)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2367(2017.3.15.)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1958.4.19일 설립된 KC대학부지에 대하여 2006.7.14.일 교육부 감사지적사항(도시계획결정 촉구)을 이행코자 2015.10.15.일부터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11.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학교로 결정하되 기존 학교내 공원을 해제하여 학교로 편입하는 대신 대체공원부지(화곡동 산204. 3,471㎡)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에서는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는 당해토지의 처분허가를 귀 부에 신청하였으나 귀 부에서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일방적 감소는 대학재정 건전성 악화 및 수익성 감소를 초래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손실보상, 등가교환 등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법인에서는 귀 부의 의견을 이행코자 도시계획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여러차례 협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첨부된 회신내용과 같이 기존대학부지 내 공원이 해제되고 대학부지가 추가 확보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육용기본재산의 일방적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귀 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회신이 있고 조건사항 미 이행으로 1년2개월이 지나도록 학교결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 그 동안 우리법인에서는 KC대학교의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되어있는 대체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려고 관련부서의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했으나 2016.9.9.일 강서구의회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의견청취 채택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심의 의결된 것 입니다.

6. 현재 기존학교내 공원해제부지는 학교시설이 인접되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고 대체공원부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고 향후 이용하거나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조속 이행하여 학교결정을 받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고려해볼 때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법인에서는 향후 학교발전계획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강서구청장과 학교결정, 실시계획 인·허가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별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7. 우리 법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KC대학교의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11.18.)까지 완료하였으나 대체공원부지의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학교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귀 부의 감사지적사항의 이행과 2017년도 교육부 이행과제(간호학부와 식품과학부 신설로 건물확충 시급)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학사운영의 제한과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체공원부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1부
2) 재산명세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6) 직접 교육에 활용여부 및 향후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총장 의견서 1부
7) 지적현황 및 위치도 1부
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가결 공문 1부
9) 강서구청 MOU협약서 1부 끝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이사장

담당	이혜영	처장	박신애	이사장	박재서

협조자

시행 법인2018-12 (2018.1.30) 접수 ( )

우 07661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화곡동) / www.kcu.ac.kr
전화 02-2600-2413 전송 02-2607-6931 / shinaepark2015@gmail.com / 공개

■ 교육부 질의회신 및 반려처분 공문

〔2016.6.21, 사립대학제도과-5809호〕: 기부채납 관련 교육부 회신 공문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교육부

교육개혁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교육용 기본재산 기부채납 관련 회신

1. 관련 :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법인-101(2016.6.17)

2. 학교법인은 기부채납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통한 손실보상, 지자체 소유 부동산과의 등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교육용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학교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방적 재산 감소는 교비회계 및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에 저해되며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귀 법인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라 재산 처분 및 권리 포기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7.3.15, 사립대학제도과-2367호〕 :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 반려 공문

교육부

수신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이사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 반려

1. 관련 :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법인2017-97-2(2017.3.9)

2. 귀 학교법인이 제출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여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반 려 사 유】

○ 금번 신청한 용도변경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동 재산을 기부채납하기 위한 처분 신청으로써, 학교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방적인 감소를 초래함

- 이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감소분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일방적인 재산 감소에 해당됨

○ 또한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일방적인 감소는 대학재정 건전성 악화 및 수익성 감소를 초래하기에

- 지방자치단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등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확보·

〔2018.4.4, 사립대학제도과-3914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공문

교육부

수신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이사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1. 관련 :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법인2018-12(2018.2.12.)

2. 귀 학교법인이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유로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 려 사 유】

o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방적 재산 감소는 교비회계 및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에 저해되며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귀 법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 등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일방적인 감소가 없도록 하여야 함

o 또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상 처분금액 및 기본재산 변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는 등 미비점이 있음. 끝.

붙 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3] 조서

1) 구역계획

구 분	구 역		구분	명칭	면적(㎡)	비고
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하딩관, 채셔관	7,010	
			②	kcu카페, 홀튼관, 라커관, 알렌관, 파수리관	7,648	
			소계		14,658	
		혁신성장구역	–	–	–	
	유지	상징경관구역	–	–	–	
		외부활동구역	③	대운동장	5,436	
			소계		5,436	
	보존	녹지보존구역	④	봉제산녹지대	1,582	
			소계		1,582	
	합계				21,676	
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⑤	산·관·학협력관(연합기숙사 포함)	6,177	
			소계		6,177	
		혁신성장구역	–	–	–	
	유지	상징경관구역	–	–	–	
		외부활동구역	–	–	–	
	보존	녹지보존구역	⑥	공항로변녹지대	1,257	
			⑦	등마루녹지대	10,007	
			소계		11,264	
	합계				17,441	
총계					39,117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관리지역	용도지역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강서 대학교	1캠퍼스	21,676㎡ (21,676㎡)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97㎡ (11,397㎡)	60.0	18.1	6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279㎡ (10,279㎡)	30.0	23.0	30.0
	2캠퍼스	17,441㎡ (16,648㎡)	제1종일반주거지역	3,363㎡ (3,363㎡)	60.0	–	6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2,910㎡ (12,117㎡)	30.0	1.8	3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8㎡	50.0	–	50.0

※ 제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12,117㎡)는 비오톱1등급지(793㎡)을 제외한 면적임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범위)**: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3) 밀도계획 (용적률)

구분		총면적(㎡) (A)	계획 연면적(㎡) (지상)	비오톱 1등급지 (㎡) (B)	공원(㎡) (C)	산정 면적(㎡) D=(A-B-C)	총 조례용적률 (%)	총 사용용적률 (%)	총 관리용적률 (%)
강서 대학교 1캠퍼스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397	8,834.76	-	-	11,397	150.0	75.4	150.0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279	5,162.38	-	-	10,279	150.0	50.2	150.0
강서 대학교 2캠퍼스	제1종일반 주거지역	3,363	5,289.54	-	-	3,363	150.0	157.3	180.0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2,910	5,795.49	793	-	12,117	150.0	44.9	150.0
	제3종일반 주거지역	1,168	-	-	-	1,168	250.0	-	250.0

※ 제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12,117㎡)는 비오톱1등급지(793㎡)을 제외한 면적임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구역면적 (㎡)	용적률(%)				높이(m)	비고
		조례	사용	이전	관리		
①	7,010	150.0	70.6	-	80.0	○ 지표로부터 12m(3층) 이하	일반관리구역
②	7,648	150.0	115.1	-	150.0	○ 지표로부터 28m(7층) 이하	일반관리구역
③	5,436	150.0	-	-	5.0	○ 지표로부터 5m(1층) 이하	외부활동구역 (휴게시설)
④	1,582	150.0	-	-	-	-	녹지보존구역
⑤	6,177	161.0	3.5	+19.0	180.0	○ 지표로부터 28m(7층 이하)	일반관리구역 (⑦구역에서 용적률 이양)
⑥	1,257	189.0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7	150.0	-	-12.8	-	-	녹지보존구역

참 고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1.13>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카. 삭제 <2018.11.13>

타. 삭제 <2018.11.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